##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5

발의연월일: 2016. 7. 4.

발 의 자 : 윤후덕 · 노웅래 · 안규백

김경협 · 심재권 · 김민기

김병욱 · 정세균 · 윤관석

인재근・박남춘・윤소하

박 정・홍철호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대법원은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지위에 있고, 사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를 하였다면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여 원청사업주의 사내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행정기관은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내 하청근로자와 원청사 업주 등 간접고용관계의 당사자 간 직접교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현행법을 해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

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호 단서 및 제29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제29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른 사용자와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사	2
업의 經營擔當者 또는 그 사	
업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	
동하는 者를 말한다. <u>&lt;단서</u>	<u>다만,</u>
<u>신설&gt;</u>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
	만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
	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
	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
	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u>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u>
	용자로 본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	
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	
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단서 신설>	<u>다만, 제2조제2호 단서에 따</u>
	른 사용자와 그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인 영향력을 받는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